



정부의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보험금 지급관리

조용운 연구위원, 오승연 연구위원

- 정부는 2019년 7월부터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기로 함
 - 현재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장애진단서는 장애부위·질환명과 「장애등급판정기준」에 의거한 검사항목·검사결과·장애정도 및 장애등급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 장애등급은 삭제될 것임
 - 민간 보험상품 중 장애등급에 근거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 최근 7년간 280만 건이 판매되었는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지급기준이 없어지게 되므로 보험회사는 대안적 지급기준이 필요함
- 장애등급제에 기초한 상품의 보장 중단 및 불명확성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회사는 동 제도가 폐지되더라도 계약 당시의 보험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법률상 장애등급이 변경 또는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계약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민원 방지를 위해 계속 보장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보험산업이 마련해 놓은 표준약관의 장애분류표를 적용하도록 하는 계약 변경을 추진할 경우 표준약관에는 등급이 없으므로 불명확성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가 있을 경우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장애진단서에 기초하여 기존의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을 직접 수행할 수 있을 것임
 - 현재의 「장애인복지법」 체계상 장애등급 판정 기준이 명확하고, 이는 표준약관의 장애분류표와 의학적 접근을 한다는 면에서 유사한 형식이므로 보험회사가 판정함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임
 - 보험회사는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지만, 계약자는 추가적인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음
 - 계약자와 보험회사 간 등급판정에 이견이 있을 경우 제3의 의료기관을 통해 재심의 할 수 있도록 함
 - 보험회사 간 등급 판정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보험산업 전체가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여 계약자 간 보험금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봄
- 향후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진단서 개정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민원을 유발하는 등의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장애등급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은 보험회사가 장애진단서에 기초하여 등급을 판정하여야 함
 - 따라서 개정 장애진단서는 장애등급 이외의 현재 내용을 그대로 포함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1. 검토배경



- 정부는 2019년 7월부터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제 및 이에 기초한 일률적 서비스 체계를 폐지하고 ‘종합적 욕구조사’에 따른 개별 맞춤형 서비스 체계를 도입하기로 함
 - 현재 의료기관은 요청이 있을 시 장애등급을 포함하는 장애인단서¹⁾를 발급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송부하고 있음
 - 장애인단서 기재 내용은 장애부위 또는 질환명과 「장애등급판정기준」에 의거한 검사항목·검사결과·장애정도 및 장애등급(1~6급) 등이나 앞으로 장애등급은 삭제될 것임
 -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종류 등과 관계없이 장애등급에 기초하여 장애인연금, 활동지원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 지난 3월 5일 정부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포함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18~’22년)’을 심의·확정하였음²⁾
 - 기존의 ‘장애등급’을 대신해서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적 욕구조사’를 2019년 7월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임
- 현재 민간 보험상품 중 장애등급에 근거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 있는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지급기준이 없어지게 됨
 -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비하여 이러한 보험상품의 보험금 지급기준 마련이 시급함
- 본고는 해당 보험상품의 현황을 조사하고,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보험금 지급 대책을 논의하고자 함
 - 장애인단서 상의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하는 보험상품 외에 장애정도에 비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도 고려한 정책방향 제안을 병행하고자 함

1) 의료기관은 장애인단서를 발급하는 등 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보험산업은 표준약관에서 장해분류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장해라는 용어를 사용함

2) 국무조정실 보도자료(2018. 3. 5), “문재인 정부 장애인 정책, 70개 추진과제 확정”

2. 장애등급제 폐지 경과



- 현재 「장애인복지법」 체계상 장애등급제는 기능손상이라는 의학적 장애정도의 판정체계³⁾에 기반하여 15가지 장애유형 각각에 대해 장애정도에 따라 1~6등급으로 분류함

- 장애등급제의 본래 취지는 한정된 재원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선별할 필요성에서 도입됨(〈표 1〉 참조)⁴⁾

- 장애등급에 따라 지원서비스의 종류와 제공 범위가 정해짐

- 1~2급은 장애인연금, 활동지원서비스 등을 받고, 3급은 장애인연금(중복장애만), 경증장애수당, 활동지원서비스 등을 받으며, 4급부터는 경증장애수당 등을 받음

〈표 1〉 장애등급에 따른 지원서비스

장애유형에 따른 등급구분		등급에 따른 지원서비스	
장애유형	등급	장애등급	지원서비스 내용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및 요루, 뇌전증	1~6급	1~2급	장애인연금, 활동지원서비스, 전기·도시가스 할인, 철도(50%) 및 항공(50%) 할인, 지방세 면제, 소득세 공제 등
	2~6급		
	3~6급		
	1~3급	3급	장애인연금(중복장애만), 경증장애수당, 활동지원서비스, 전기·도시가스요금할인, 철도(50%) 및 항공(50%) 할인, 지방세 면제, 소득세 공제 등
	2, 5급		
	1~3, 5급	4급	경증장애수당, 철도(30%) 및 항공(50%) 할인, 시각 4급만 지방세 면제, 소득세 공제 등
	2~5급		
		5~6급	경증장애수당, 철도(30%) 및 항공(30%) 할인, 소득세 공제

주: 항공요금할인은 대한항공 국내선 기준. 아시아나 항공은 1~6급에 국내선 50% 할인

- 의학적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등급은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기준으로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옴

3) 순수한 의학적 관점에서 각종 후유장애에 따른 신체장애를 백분율(%)로 평가하는 방식임. 근로기준법에서 사용하는 장애평가방법과 자동차보험과 법원에서 사용하는 McBride 장애평가방법은 노동능력상실률을 기준으로 장애를 평가하고 있음

4) 「국민연금법」의 장애등급은 1~4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의 장애등급은 1~14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요양등급은 1~4급으로 분류함

- 장애등급 하나를 기준으로 장애인연금, 활동지원서비스 등의 복지가 결정되다보니 각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과 실제 지원받고 있는 서비스 사이에 괴리가 존재한다는 점이 지적되어 옴
- 대체로 1~3급의 중증장애인에게 지원이 편중되어 있어 장애등급은 낮지만 지원서비스, 특히 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들이 배제되어 옴

■ 장애인에게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낙인효과를 초래한다는 비판도 제기되어 옴

- 또한 정부의 예산에 따라 등급심사가 영향을 받는 등 등급판정에 일관성과 형평성이 결여된 공급자 위주의 전달체계라는 비판이 있음

■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판정기준을 둘러싸고 장애등급제를 단순화하는 방안, 각 서비스별로 적절한 기준을 도입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어 옴

- 장애인 등급을 중증과 경증으로 나누는 등급 단순화 방안은 현행 장애등급제의 한계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음
- 모든 서비스별로 적격기준을 도입하는 방안은 행정상 비용이 많이 지출된다는 비판이 있음

■ 현재 정부에서 논의 중인 ‘종합적 욕구조사’의 구체적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지원서비스 분야를 세 가지로 나누고, 각 분야별 욕구조사 결과에 따라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임

- ‘종합적 욕구조사’는 일상생활지원(2019년 7월), 이동지원(2020년), 소득·고용지원(2022년)의 세 분야로 나눠 순차적으로 도입해 갈 계획임
- 현재 1~3급의 중증장애인에 한해 제공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4급 이하의 장애인도 종합적 욕구조사 결과에 따라 이용 가능하게 됨
- 현재 단일 장애 3급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없으나 종합적 욕구조사 결과에 따라 실제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됨

■ 「장애인복지법」 체계상 장애등급제는 한정된 자원과 자원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공급자 중심의 논리하에 설계된 제도여서 여러 문제가 노출되어, 정부는 이를 폐지하고 소비자 중심의 제도로 바꾸어 소비자 만족도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봄

3. 장애등급제에 근거한 보험상품 현황



■ 여러 법률에서 정하는 장애(장해)등급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양한 보험상품이 있음

- 「장애인복지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장애(장해)등급에 따라 보장하는 상품이 다수 있음(〈표 2〉참조)
- 한 예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은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를 정하고 있고, 이에 기초한 상품은 의료기관이 발급한 장애진단서의 장애정도에 비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표 2〉 법률상 장애(장해)등급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의 보장내용

보장항목	보장내용	사용통계	지급금액 (S: 보험가입금액)
질병/상해 장애	질병/상해로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 및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의 장애등급(1~6급) 진단 시	장애인실태조사 (보건사회연구원) 등록장애인현황(보건복지부)	1, 2급: 1S 3급: 0.5S (4~6급 미판매)
질병/상해 후유장해	질병/상해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표준약관상 장해분류표에 해당하는 장해상태 진단 시	보험회사 경험통계(경험률)	장해지급률(3~100%) *S
장기간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건강보험공단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4등급 판정 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현황(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건강보험)	1급: 1S 2급: (2/3)S 3,4급: (1/3)S
교통사고부상	교통사고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2호와 관련, 동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사항 중 2. 영역별 세부지침 준용)에서 정한 부상등급(1~14급) 진단 시	자동차보험 사고통계(보험회사) → 경험률로 전환	1급: 1S 2~4급: 0.5S 5~7급: 0.25S 8~11급: 0.125S 12~14급: 0.075S
산업재해장해 진단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상해사고 발생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 산업재해 장해등급 분류표에서 정한 신체장해등급(1~14급) 진단 시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지급통계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1급: 1S, 2급: 0.8S 3,4급: 0.7S 5,6급: 0.5S 7,8급: 0.3S 9,10급: 0.2S 11,12급: 0.1S 13,14급: 0.05S

- 폐지 예정된 「장애인복지법」 체계의 장애등급제에 기초한 보험상품은 현재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장애진단서 상의 12가지 장애 유형에 대해 장애등급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음

- 보험기간 중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지체 · 뇌병변 · 시각 · 청각 · 언어 · 지적 · 신장 · 심장 · 간 · 안면 · 장루 및 요루 · 호흡기장애 중 하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고 1, 2, 3급 장애인이 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보장함

- 장애등급에 기초한 보험상품의 판매실적은 적지 않은 상황임

- 2010~2016년 사이에 280만 건이 판매된 상태임

〈표 3〉 「장애등급판정기준」에 기초한 보험상품의 7년간 누적 판매 실적

(단위: 천 건, 백만 원)

보장항목	신계약건수	지급건수	위험보험료
장애(1~3급)	2,807	1,4	161,410

주: 2010~2016년 장기손해보험 누적 실적

자료: 보험개발원

- 동 상품은 등급 판정을 위한 「장애등급판정기준」의 변경 혹은 폐지의 경우 적용할 기준을 정해 놓고 있음

- 표준약관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및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라 「장애등급판정기준」이 변경되었으나 장애등급 판정이 가능한 경우 보험계약 시점 기준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 시점(장애등급 판정시점)의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사업방법서는 「장애등급판정기준」이 폐지 또는 변경되어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률에서 정한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정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동 상품은 해당 기준에 따른 등급 판정 방법에 대해서는 정해놓고 있지 않아 대책이 필요함

4. 보험금 지급관리



- 장애등급제에 기초한 상품의 보장 중단 및 불명확성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회사는 동 제도가 폐지되더라도 계약 당시의 보험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법률상 장애등급이 변경 또는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계약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민원 방지를 위해 계속 보장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⁵⁾
 - 보험산업이 마련해 놓은 표준약관의 장애분류표를 적용하도록 하는 계약 변경을 추진할 경우 표준약관에는 등급이 없으므로 불명확성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가 있을 경우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장애진단서에 기초하여 기존의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을 직접 수행할 수 있을 것임
 - 현 「장애인복지법」 체계상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명확하고, 이는 표준약관의 장애분류표와 유사한 의학적 판정기준이므로 보험회사가 등급을 판정함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임
 - 판정과정에서 보험회사는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지만, 계약자는 추가적인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음
 - 계약자와 보험회사 간 등급판정에 이견이 있을 경우 제3의 의료기관을 통해 재심의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보험회사 간 등급 판정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보험산업 전체가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여 계약자 간 보험금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봄
- 향후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진단서 개정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민원을 유발하는 등의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봄
 - 현재 표준약관의 장애분류표에 기초한 보험상품은 장애등급을 필요로 하지 않으나 장애진단서 상의 장애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산출하여야 함
 - 장애등급에 기초한 상품은 장애진단서에 근거하여 보험회사가 장애등급을 판정하여야 함
 - 따라서 장애진단서는 장애등급 이외의 현재 내용을 그대로 포함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kiri**

5) 재산상의 손해와 관련된 보험은 피보험이익이 없게 되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됨